

검 토 보 고 서

■ 조례명

-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■ 주요내용

- 등 개정조례안 제19조(의견진술 기회의 부여)의 조항을 삭제

■ 개정사유

- 행정절차법(법률 제5241호)이 '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(의견청취)에 의견청취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 제19조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함.

■ 검토결과(의견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등 의무부과 행정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'행정절차법'이 '98. 1.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 처분 사전통지서, 청문통지서, 의견제출서 등 모든 행정 절차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조(의견진술 기회의 부여)와 행정절차법 제22조의(의견청취)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코자하는 조항으로서,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9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 (의견진술 기회의 부여) ①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②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반 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시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.</p>	<p>(삭 제)</p>